



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기준 · 규격 중 개정

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 자료제공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“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”을 고시했다.

이번 고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청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하며,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범위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.

본 고에서는 주요내용을 살펴본다.

- 편집자 주 -

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기준 · 규격 중 개정

식품공전 제6. 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기준 · 규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. 재질별 규격 1. 중 1-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-41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-아디페이트(polybutylenesuccinate-co-adipate : PBSA)

1) 정의

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-아디페이트라 함은 호박산, 아디핀산 및 1,4-부탄디올의 공중합물 질을 60% 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한다.

2) 재질규격(mg/kg)

(1) 납 및 카드뮴 : 각각 100 이하

3) 용출규격(mg/l)

(1) 중금속 : 1.0 이하(납으로서)

(2) 과망간산칼륨소비량 : 10이하

(3) 증발잔류물 : 30 이하

(다만, 전분을 함유한 경우에는 제6. 2.재질별 규격 9.전분제 3)용출규격을 적용한다.)

2. 재질별 규격 8. 중 “1) 깊이가 2.5cm 미만 또는 액체를 넣을 수 없는 기구·용기규격($\mu\text{g}/\text{cm}^2$)”을 “1) 깊이가 2.5cm 미만 또는 액체를 넣을 수 없는 기구·용기의 용출규격($\mu\text{g}/\text{cm}^2$)”으로, “2) 깊이가 2.5cm 이상으로 용량이 1.1l 미만인 기구·용기규격($\mu\text{g}/\text{ml}$)”을 “2) 깊이가 2.5cm 이상으로 용량이 1.1l 미만인 기구·용기의 용출규격($\mu\text{g}/\text{ml}$)”으로, “3) 깊이가 2.5cm 이상으로 용량이 1.1l 이상인 기구·용기규격($\mu\text{g}/\text{ml}$)”을 “2) 깊이가 2.5cm 이상으로 용량이 1.1l 이상인 기구·용기의 용출규격($\mu\text{g}/\text{ml}$)”으로 한다.

3. 시험방법 6. 2), (1), ② 중 “③ 시험에 따라”를 “② 시험에 따라”로 한다.

3. 시험방법 중 “9. 유리, 도자기, 법랑 및 용기류 시험방법” 다음에 “1) 용출시험”을 추가하고, 1)(1), (2) 및 2)(1), (2)를 (1)①, ② 및 (2)①, ②로 한다.

3. 시험방법 9. 1), (1) 중 “시험용액으로 검체를”을 “검체를”로 하고, “24시간 방치한 다음 침출액 20ml를 비이커에 취해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다. 식힌 후 염산(1→2) 2ml를 조용히 가하여 용해한 다음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식힌 후 0.1N 질산으로 용해하여 전량을 1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.”를 “24시간 방치한 액을 비이커에 옮겨 시험용액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3. 시험방법 9. 1), (2) 중 “(2) 시험에 따라”를 “② 시험에 따라”로 한다.

3. 시험방법 9. 1) 중 ③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9. 2) 중 (3)을 삭제한다.

③ 비소

시험용액 20ml를 취하여 제7. 일반시험법 6. 유해성금속시험법 3) 금속별시험 (1) 비소에 따라 시험한다.

3. 시험방법 9. 2), (1) 중 “24시간 방치한 다음 침출액 5ml를 비이커에 취해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다. 식힌 후 염산(1→2) 2ml를 조용히 가하여 용해한 다음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식힌 후 0.1N 질산으로 용해하여 전량을 1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.”를 “24시간 방치한 액을 비이커에 옮겨 시험용액으로 한다.”로 하고, (2) 중 “ $C \times V \times 2$ ”를 “ $C \times V$ 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☐



〈신·구조문 대비표〉

현행	개정(안)
<p>식품공전 제6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·규격</p> <p>1. 일반기준 (생략)</p> <p>2. 재질별 규격</p> <p>1. 합성수지제 1-1~1-40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8. 유리, 도자기, 법랑 및 용기류</p> <p>1) 깊이가 2.5cm미만 또는 액체를 넣을 수 없는 기구·용기 규격(μg/cm²) (1) ~ (2) (생략)</p> <p>2) 깊이가 2.5cm이상으로 용량이 1.1리미만인 기구·용기 규격(μg/ml) (1) ~ (3) (생략)</p> <p>3) 깊이가 2.5cm이상으로 용량이 1.1리이상인 기구·용기 규격(μg/ml) (1) ~ (3) (생략)</p> <p>9. (생략)</p> <p>3. 시험방법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금속제 시험방법</p> <p>1) (생략)</p> <p>2) 용출시험 (1) 납 ① (생략) ② 시험 시험용액을 적당량 취하여 이하 2. 합성수지제 시험방법</p> <p>2) 재질시험 (1) 납 및 카드뮴 ③ 시험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7. ~ 8. (생략)</p>	<p>식품공전 제6.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·규격</p> <p>1. 일반기준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재질별 규격</p> <p>1. 합성수지제 1-1~1-40 (현행과 같음) 1-41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-아디페이트 (polybutylene succinate-co-adipate : PBSA)</p> <p>1) 정의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-아디페이트라 함은 호박산, 아디핀산 및 1,4-부탄디올의 공중합물질을 60% 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한다.</p> <p>2) 재질규격(mg/kg) (1) 납 및 카드뮴 : 각각 100 이하</p> <p>3) 용출규격(mg/l) (1) 중금속 : 1.0 이하(납으로서) (2) 과망간산칼륨소비량 : 10이하 (3) 증발잔류물 : 30 이하 (다만, 전분을 함유한 경우에는 제6. 2.재질별 규격 9.전분제 3)용출규격을 적용한다.)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유리, 도자기, 법랑 및 용기류</p> <p>1) 깊이가 2.5cm미만 또는 액체를 넣을 수 없는 기구·용기의 용출규격(μg/cm²) (1) ~ (2) (현행과 같음)</p> <p>2) 깊이가 2.5cm이상으로 용량이 1.1리미만인 기구·용기의 용출규격(μg/ml) (1) ~ (3) (현행과 같음)</p> <p>3) 깊이가 2.5cm이상으로 용량이 1.1리이상인 기구·용기의 용출규격(μg/ml) (1) ~ (3)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시험방법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금속제 시험방법</p> <p>1) (현행과 같음)</p> <p>2) 용출시험 (1) 납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험 ----- ② -.</p> <p>7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〈신 · 구조문 대비표〉

현행	개정(안)
<p>9. 유리, 도자기, 법랑 및 용기류 시험방법 〈추가〉 1) 액체를 넣었을 때 깊이가 2.5cm 이상의 검체 (1) 시험용액의 조제 시험용액으로 검체를 물로 잘 씻은 다음 액체를 넣었을 때 넘쳐 흐르는 면으로부터 5mm 아래까지 4%초산용액을 채운다. 다만, 용량이 3이상인 검체의 경우만 4%초산용액의 양을 3로 한다. 적당한 뚜껑을 덮고 상온에서 암소에 24시간 방치한 다음 침출액 20ml를 비이커에 취해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다. 식힌 후 염산(1→2) 2ml를 조용히 가하여 용해한 다음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식힌 후 0.1N 질산으로 용해하여 전량을 1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.</p> <p>(2) 납 및 카드뮴 시험용액으로 2. 합성수지제시험방법 1) 재질시험 (1) 납 및 카드뮴 (2) 시험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〈신설〉 2) 액체를 넣었을 때 깊이가 2.5cm미만인 검체 또는 액체를 넣을 수 없는 검체 (1) 시험용액의 조제 검체를 물로 잘 씻은 다음 액체를 넣었을 때 깊이가 2.5cm 미만인 검체를 물로 잘 씻은 다음 넘쳐흐르는 면으로부터 5mm아래까지 4%초산용액에 채우고, 액체를 넣을 수 없는 검체는 식품에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4%초산용액을 담그어 상온에서 암소에 24시간 방치한 다음 침출액 5ml를 비이커에 취해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다. 식힌 후 염산(1→2) 2ml를 조용히 가하여 용해한 다음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식힌 후 0.1N 질산으로 용해하여 전량을 1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.</p> <p>(2) 납 및 카드뮴 (생략) * 단위면적당 용출량(μg/cm²) = $\frac{C \times V \times 2}{S}$</p> <p>(3) 비소 시험용액 20ml를 취하여 제7. 일반시험법 6. 유해성금속 시험법 3) 금속별시험 (1) 비소에 따라 시험한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9. 유리, 도자기, 법랑 및 용기류 시험방법 1) 용출시험 (1) 액체를 넣었을 때 깊이가 2.5cm 이상의 검체 ① 시험용액의 조제 검 체 를 ----- ----- ----- ----- 액을 비이커에 옮겨 시험용액으로 한다.</p> <p>② 납 및 카드뮴 ----- ----- ② ----- -----.</p> <p>③ 비소 시험용액 20ml를 취하여 제7. 일반시험법 6. 유해성 금속시험법 3) 금속별시험 (1) 비소에 따라 시험한다. (2) 액체를 넣었을 때 깊이가 2.5cm미만인 검체 또는 액체를 넣을 수 없는 검체 ① 시험용액의 조제 ----- ----- ----- 액을 비이커에 옮겨 시험용액으로 한다.</p> <p>② 납 및 카드뮴 (현행과 같음) * 단위면적당 용출량(μg/cm²) = $\frac{C \times V}{S}$</p> <p>〈삭제〉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